

#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1994년도

사회도시위원회

# 1994년도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

1994. 12. 7

사회도시위원회

## 1. 감사의 목적

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,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 집행 과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, 행정을 감시 통제하여 각종 안전 심사의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행정사무집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## 2. 감사 기간

94. 12. 1 ~ 12. 7(7일간)

## 3. 감사실시 대상기관

대 상 기 관	관 련 근 거
구 청 각 과 소 (11개과·소)	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5 조
쓰레기처리대행업자, 분뇨수집, 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자	"

4. 감사반의 편성(13명)

대상기관	감사위원회	감사위원	감사보조
<input type="checkbox"/> 구 청 사 회 과 위 생 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 소 과 도시개발과 건 축 과 건 설 과 지역교통과 지 적 과 보 건 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쓰레기처리대행업체 분뇨수집운반및 정화조청소대행업체	사회도시위원장 박양현 의원	손영일의원(간사) 박이찬의원 하종수의원 이기도의원 박용갑의원 김정해의원 이종학의원 이종택의원 권춘갑의원 손성태의원 배영철의원 전부진의원	전문위원 허 면 행정 7급 최창식 기능10급 황우영 기능10급 한순천

5.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

일 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비 고
94. 12. 1(목) 10 : 00~10 : 30		달서구의회 소회의실 Ⅱ	1. 감사실시 선언 2. 위원장 인사 3. 구청장인사 및 간부소개
94. 12. 1(목) 10 : 00~	사 회 과 위 생 과 가 정 복 지 과	"	감 사 실 시 (현장확인)
94. 12. 2(금) 10 : 00~	지 역 경 제 과 환 경 보 호 과 청 소 과	"	감 사 실 시 (현장확인)

일 시	감사대상기관	감사장소	비 고
94. 12. 3(토) 10:00~	도 시 개 발 과	달서구의회 소회의실 II	감 사 실 시 (1개과)
94. 12. 4(일)	공 휴 일		
94. 12. 5(월) 10:00~	건 축 과 지 적 과 건 설 과	"	감 사 실 시 (3개과)
94. 12. 6(화) 10:00	지 역 교 통 과 보 건 소	"	" (2개과)
94. 12. 7(수) 10:00~	사회도시위원회 소 관 전 부 서	" 달서구관내	1. 보충질문 및 답변 2. 감사결과 강평 3. 감사종료 선언 *해당부서장 전원참석

6. 주요감사실시 내용

- 가. 자료제출요구 사항
- 나. 감사대상 사무기관 사항
- 다. 주요 현안사항
- 라. 구정질문중 미처리된 사항
- 마. 주민진정 및 건의사항

7. 감사결과처리의견 : 별첨

# 94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

사회도시위원회 (94. 12. 1 ~ 12. 7(7일간))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1	사회과	재기불우이웃 방문복지사업추진	○ 재기불우이웃방문복지사업비 당초예산 440만원 전액 집행하지 않고 예산사장, 예산편성이 부적정함	시 정
2	"	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 직업훈련비 지원	○ 과도한 예산(245, 440천원)을 집행하여 자료상 125명이나 수료하였 지만 그중 98명이 취업하였고 217명이 미취업, 사업의 효과성이 저 조하며 사후 철저한 관리 및 훈련학원 수시점검 ○ 대상자발굴에 따른 홍보철저로 수혜를 넓히는 방안검토	시 정 및 견 의
3	"	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	○ 무료급식 운영지원이 현재 주2회 실시하고 있음. 구정질문시 년차적 으로 확대 실시(94년주3회, 95년주4회) 하기로 하였으나 반영이 되 지 않았음.	시 정
4	"	생활보호조비지출내역	○ 불우이웃돕기성금 예산1억5천, 생활부조비 예산2억중 년도폐쇄기 1 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할 것 예상, 결과적으 로 생활부조비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집행에 문제성이 있고, 예산집행시 참치셋트나 라면등 구입을 지양하고 본래의 취지대로 감 작스런 사건사고로 인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집행요 구 및 효과적인 방안검토.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5	위생과	무허가위생영업소현황 및 조치내역	○ 본리동 352-5번지 포항횡집외 7개업소는 93년 가을경 개업, 출입한 적이 있으나, 94년1월11일 적발 1월14일 고발조치함 범집행에 있어 형평성이 없음.	시 정
6	"	위생영업소교육실적	○ 위생영업소 교육시 종업원이 참여하므로써 교육의 효과성이 다소 낮으므로 업주가 반드시 교육을 필할 수 있게 조치강구	건의 의
7	"	상설 및 합동단속 예비지급	○ 상설 및 합동단속여비 총예산 2,550만원중 44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 발생,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단속	시 정
8	가 정 복지과	청소년 공부방 현황 및 지원실적	○ 공부방 현장 확인결과 부공화공부방은 비가 새고 유지관리가 부실함. 대부분의 공부방이 당초 설립목적 보다는 이용 인원이 적고 관리가 부실하여 비행 청소년의 은신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·감독철저	시 정
9	가 정 복지과	부자가정 실태현황	○ 부자가정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취업상태가 부진함. 이에 따른 행정지원실적이 전무한 상태임. 부자가정에게 지원하는 만큼 지원 건의	건의 의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10	가 정 복지과	경로당 난방연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내역	○ 성당2동소계 경로당 전부가 난방연료비가 없어 동절기에 냉방상태로 생활하므로 원성이 매우 큼. 내년도 경로당 난방연료 및 유지관리비 지원대상조사시 철저를 기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.	시 정
11	"	어린이 놀이터 현황	○ 어린이 놀이터 나무가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으며 놀이터 주변환경이 불결함으로 시정요구	시 정
12	"	주부합창단 운영비 지원철저	○ 주부합창단 운영비 지출내역중 본예산에 단복구입비등 기타운영비가 계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성예산을 플경비에서 초과지출하였음. 주부합창단 구성원이 대부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예산지원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리라 봄으로 예산절감 및 이원지출시정.	시 정
13	"	보육시설의 시설미비 사항 보완검토	○ 보육시설중 탈서어린이집에는 보육실출입구 앞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악취로 인하여 아동보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 치검토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14	지 역 경제과	가스취급업소 지도감독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가스취급업소가 밀집주택가에 소재함에도 제반시설 및 취급방법등이 부주의 하여 인근주민에 위협을 주고 있어 주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도·감독이 소홀함</li> <li>○ 취급업소가 밀집주택가에 소재하지 못하도록 허가 규제방안등 검토 건 의</li> </ul>	시 정
15	"	농지불법 단속철저 형질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단속건수 위법 2건, 적법 4건이나, 사실상 불법 형질변경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여야 하나 단속실적이 미흡함.</li> <li>○ 형질변경시 성토높이를 1m이상으로 실시하여 인접지역과 충고가 발생, 주변지의 침수 및 조망권을 저해함으로써 성토방법의 지도 철저.</li> </ul>	시 정  시 정
16	환 경 보호과	명예환경감시원활동부진 및 신고보상제 실시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명예환경감시원의 정예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사기양양책을 실시하여 명예 환경감시에 철저를 기하려는 노력 미흡.</li> <li>○ 신고보상금지급체조로 명예감시원의 신고정신양양 및 환경에 대한 감시체제수립 미흡.</li> </ul>	시 정
17	환 경 보호과	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징수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동차에 대한 환경부담금 징수율이 73%로 저조하며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징수실적이 미흡하므로 특단의 조치로 성과거양 촉구</li> </ul>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18	환경 보호과	성서소채무허가 처리업체 단속토목 환경청협조지원	○ 성서공단지구내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무허가 처리업체가 5개소가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환경청에 고발하는 환경단속업무에 업무협조체계확립 및 노력 미흡	시 정
19	"	대곡지구비산먼지 단속철저	○ 대곡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로 주변 월배지역에는 비산먼지가 대량 발생하여 주민의 보건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저조	시 정
20	"	세차장등 경정비업소 환경오염단속 실적저조	○ 세차장·카센터의 폐부동액 무단방기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폐기물 배출체계 등 관련사항의 점검지도가 소홀함.	시 정
21	청소과	오물 상습방기지역 단속실적부진	○ 보훈병원부근, 상인동일부지역에는 오물방기가 빈번한 곳이 많아 주민의 민원이 되고 있으나 오물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함.	시 정
22	"	기관단체재활용품 수집보상금지급의 계획성미흡	○ 기관단체 재활용 수집보상금을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으로 증액하고도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으로 다시 감소하려는 예산사장의 사례의 시정촉구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23	청소과	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재활용품보상제도 폐지 건의	○ 내년도에 실시될 쓰레기 종량제가 일체히 실시되면 재활용품의 다량 수집이 용이하여 수집보상제도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제도의 폐지 요구	건의
24	도 시 개발과	산불예방장비구입 현황의 자료부실	○ 산불예방장비구입 현황이 무전기등 5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,398만원으로 표시하여 해당과에 구입하지 않은 항목까지 기재함으로 자료부실.	시 정
25	"	화초구입비의 예산부기와 다른 집행	○ 화초구입비로 예산서에 단가 300원으로 구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, 실지로는 단가 1,200원의 고가 화초매입으로 비계획적인 집행 사례	시 정
26	"	서대구공단시설 관리부실	○ 녹지내 불법건축물 1동을 장기방치하고 있어 녹지조성과 주변경관을 저해하므로 조속히 철거 시정	시 정
27	"	가로수·조경수 구입 식재하자발생민발 및 사후관리 부실	○ 수목구입식제후 하자기간동안 고사시에는 구입처에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여야 하나 하자보수기간을 허용하여 적기에 보수 못하고 예산을 추가로 투입함: 사례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28	도 시 개발과	어린이공원내 시설물 관리철저	○ 어린이 공원시설물이 관리체계의 미확립으로 잦은 파손 및 사후관리 가 부실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(화장실등)	시 정
29	건축과	건축과소관 자료부실제출	○ 자료번호 1~9까지 관련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충실하지 못 하는 자료부실	시 정
30	"	송현승마장마사철거 건의	○ 송현동 승마장 임시마사 철거문제를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민불편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미흡	건의
31	건설과	도로보수공사시 맨홀 부분 함몰현상 시정	○ 도로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시 충분한 검토없이 높게 제포장함으로 맨홀 부분이 함몰되는 현상을 방지하므로 통행차량의 사고 유발등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사례	시 정
32	"	부허가 보차도단속미흡 및 보차도 허가시 허가포식 부착건의	○ 관내 부허가 보차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도 지속적인 단속미흡 ○ 부허가 보차도의 남발을 막기 위해 보차도 허가시 보차도에 허가증 병 표시를 설치하는 방안 검토요구	시정및 건의
33	"	도로 굴착후 원상복구 공사부실 및 감독소홀	○ 도로굴착후 원상복구공사시 부실로 공사하여 지반의 침하와 포장파 손으로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고, 통행차량 불편이 있는 사례 특히 기복구시 지도감독 철저	시 정

일련번호	부서별	제 목	지 적 사 항	비 고
34	건설과	지하하수도 수도구배 조결철저	○ 하수도공사시 수도의 구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통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변지역의 침수가 우려됨으로 도로의 구조와 용수통 파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지형에 맞게 조절 시행 촉구	시 정
35	"	인도블럭 및 연적에 대한 정비실적저조	○ 부설공사로 인해 관내 인도블럭 및 연적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실적 및 하자 보수공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. 향후 하자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철저	시 정
36	"	보상지연으로 공사추진 실적미흡	○ 각종 건설공사가 보상협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해 추진실적이 미흡함으로 보상협의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상호협조와 이해를 통하여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.	건 의
37	지 역 교통과	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계속감사과태료 징수실적저조	○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징수실적이 징수율 55.48%로 매우 부진하므로 조기징수 및 관련행정조치 강구로 징수율 제고 ○ 계속감사징수율 55.8%로 저조	시 정
38	"	교차로부근 주차선 구획시 주의 요망	○ 교차로부근에 주차선을 교차에 인접설치함으로 통과차량의 사고유발의 요인이 됨으로 주차선설치의 세심한 주의 요망(월배1동)	건 의
39	"	불법 노숙차량 및 폐방기차량단속실적저조	○ 불법노숙차량 단속이 일과성으로 실시함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 단속과 대형차량 견인차량 확보 노력촉구 및 건의 ○ 과태료누진적용 검토요망 및 폐방기차량단속 철저히행(백조아파트 뒷편)	시정및 건 의